##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기주익: 2025 01

		- 기준일 : 2025.01.
산업안전보건법	주 요 내 용	벌 칙
제6조[근로자의 의무]	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	-
제15조[안전보건관리책임자]	<ul> <li>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, 작업환경측정, 건강관리,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, 재발 방지대책 수립, 통계의 기록 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</li> </ul>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6조[관리감독자]	•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·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기계 · 기구 및 설비의 안전 · 보건 점검, 작업복 · 보호구 · 방호 장치의 착용 · 점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7조[안전관리자] 제18조[보건관리자]	안전 ·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· 조언하는 업무 수맹(사업의 종류, 상시 근로자 수 등 규모에 따라 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)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25조[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]	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     근로자 정기교육 : 반기 12시간 이상(사무직 및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반기 6시간 이상)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29조[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]	- 근로자 정기교육: 반기 12시간 이상(사무직 및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반기 6시간 이상)  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: 연간 16시간 이상     - 관리감독자 정기교육: 연간 16시간 이상     - 채용 시 교육: 일용직 및 기간제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, 기간제 1개월 이하 4시간, 그 외 8시간 이상     -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: 일용직 및 기간제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, 그 외 2시간 이상     - 독업내용 변경 시 교육: 일용직 및 기간제 1주일 이하 1시간 이상(타워크레인 신호수 8시간 이상),     - 그 외 16시간 이상(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)     -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: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	500만원 이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 :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4조[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]	<ul> <li>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</li> </ul>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6조[위험성평가의 실시]	<ul> <li>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・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관리 및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(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)</li> </ul>	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 직무 미 이행 시 :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7조[안전보건표지의 설치,부착]	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, 시설, 물질에 대한 경고,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,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함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8조[안전조치]	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  기계 · 기구, 기타 설비, 폭발성 · 발화성 · 인화성 물질 및 전기 · 열 · 기타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     금착 · 채석 · 하역 · 벌목 · 오송 · 조작 · 오반 · 해체 · 중량물 취급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    - 추락 · 붕괴 ·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등의 장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
제39조[보건조치]	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	근로자 사망 시 : 7년 이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제40조[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]	• 근로자는 제38조(안전조치) 및 제39조(보건조치)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사항을 지켜야 함	300만원 이하 과태료
제41조[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]	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초우를 해서는 아니 됨	1,0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제51조[사업주의 작업중지]	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
제52조[근로자의 작업중지]	• 근로자는 산업재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,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함	, ===
제54조[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]	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	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 미 보고 및 거짓 보고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57조[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]	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,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  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,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	은폐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 보고 및 거짓 보고 : 1,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63조[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]	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(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 제외)	근로자 사망 시 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제64조[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]	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*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* 작업장 순회점검 *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장소, 자료 지원 * 경보체계 대피방법 훈련 * 위생시설 이용, 설치 협조 *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작업시기 • 내용, 안전 • 보건조치 등의 확인	500만원 이하 벌금 위생시설 미 협조 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80조[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]	• 누구든지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, 대역,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·대역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며,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·보건 조치를 해야 함	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제84조[안전인증]	• 대상: [기계설비] 프레스, 전단기 및 절곡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 [방호장치] 프레스 및 전단기,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,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등	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제93조[안전검사]	• 대상: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(정격하중 2톤 이상)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(고정형), 산업용원심기, 롤러기(밀폐영구조제외), 사출성형기(체결력 294KN 미만 제외), 고소작업대(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한함), 컨베이어, 산업용 로봇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14조[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]	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,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등 조치를 하여야 함	미 게시 : 500만원 이하   과태료(1개소당)   미 교육 : 300만원 이하   과태료(대상자 1명당)
제115조[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]	•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	3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5조[작업환경측정]	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하고 결과를 보존하고(3년)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  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고,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· 설비의 설치 ·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	1,000만원 이하 벌금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8조의2[휴게시설의 설치]	• 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)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[동 법 시행규칙 194조의2 별표 21의2]	미 설치 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위반 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29조[일반건강진단] 제130조[특수건강진단 등]	• 일반건강진단 : 사무직 1회/2년, 비 사무직 1회/1년 • 특수건강진단 : 소음, 화학물질, 분진 등 노출 근로자(1회/6개월~2년) [동 법 시행규칙 별표22, 23] • 배치전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채용, 작업 전환 시 작업 전 실시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제164조[서류의 보존]	<ul> <li>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서류, 산업안전보건위원회/노사협의체 회의록(2년),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,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 기록, 화학물질의 유해성 ·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,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,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, 안전인중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</li> </ul>	300만원 이하 과태료 (각 서류마다 적용)